

국민을 위한
검찰 정상화

수사·기소권 분리
팩트체크

더불어민주당



검찰 주장

**검찰 수사권-기소권 분리는
검찰 죽이기다?**

**대한민국 검찰은 70여년동안 기소권과
수사권을 독점, 형사사법 전반에
엄청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.**

**이 때문에 검사 비리나 권한남용, 인권침해
등이 발생해도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죠.**

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,
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, 경찰은 수사권을 받아
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잡아 형사사법체계 바로잡고 국민 인권을
보호하자는 게 양식 있는 국민의 일치된 생각입니다.

Q

검찰 주장

검사의 수사권은
헌법에 규정돼 있다?

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
검사의 <영장청구권>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
위한 규정이지, 검사의 지위나 수사권을
보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.

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



검찰 주장

**6대 중요범죄를
수사할 수 없다?**

**△부패범죄 △경제범죄 △선거범죄 등
6대 범죄 수사는
경찰이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.**

〈 경찰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6대 범죄 사건들 〉

- 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사건 (‘20. 10월)
- 2조 2천억 원대 가상자산거래소 ‘브이글로벌’ 유사수신 사기 사건 (‘21. 3월)
- LG-SK 전기자동차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(‘22. 3월)
-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 유출사건 (‘20. 5월)
- 차량부품으로 위장 270억대 마약 밀반입 조직 일망타진 사건 (‘21. 7월)
- 부산 지하철도 침수 사고 수사 사건 (‘20. 9월)
- 이천 물류창고 화재 (‘20. 4월)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(‘21. 6월)



검찰 주장

**경찰이 잘못된 수사를
검사가 바로잡은 경우가 많다?**

**최근 경찰이 <기소의견>으로
송치한 사건이 <불기소처분>으로
바뀐 경우는 전체의 1.6%에 불과합니다.**

**그런데, 검사가 기소했으나
1심에서 <무죄판결> 받은 경우는
4.17%에 달합니다.**

누가 수사를 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?

Q

검찰 주장

**경찰이 송치한 사건에
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
할 수 없다?**

**형사소송법 개정안에
“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
의견을 들을 수 있다”는 조항이 신설됩니다.
경찰에 보완수사 요구, 사건관계인
의견 청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**

검찰 주장

Q

**구속기간 내 처리를 위해
반드시 직접수사가
필요하다?**

**오로지 검사만이
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
오만과 독선의 발로입니다.**

**공소 제기-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
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,
경찰이 실제 수사하면 됩니다.**

일선 검사들은 지금도 경찰이 보내는 구속송치사건을
직접 처리하는 데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.

Q

검사는 무죄판결에
인사상 불이익 받고,
수사통제를 받기 때문에
권한남용 하지 않았다?

검사가 평정 등으로
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로는 대부분 '법원과 견해차'를 이유로
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<제 식구 감싸기>,
<깜깜이 평정>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
(21년 1~8월 4810건 중 4231건이 '과오 없음' 판정)

검찰 주장

Q

**노동청, 세관, 국세청 등
<특별사법경찰관리> 수사를
지휘할 수 없다?**

**검찰 수사권-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
(형소법, 검찰청법) 내용에
특사경 지휘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.
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
새빨간 거짓말입니다.**

Q

검찰 주장

**검찰을 대체할
수사기관이 없다?**

**이 역시 검찰의 오만과 독선을
그대로 드러내는 비뚤어진 인식입니다.**

**검찰의 70년 전문성이란 건
그 어떤 견제와 통제도 없이
권력과 제도적 특혜에 기생해 독주해 온
〈그들만의 독점권력〉일 뿐입니다.**



검찰 주장

**OECD 국가들은
검찰 수사권을 보장한다?**

**검찰은 영국, 미국이 직접수사권을
보장한다고 강변합니다.**

**하지만 두 나라는 한국 검찰처럼
직접 조서를 쓴다거나, 압수수색 영장을
집행하는 등 수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**

OECD 회원국 34개국 중 한국처럼
검사가 직접수사권과 수사인력을 가지고 실제 수사를 하는 곳은
우리까지 5개국 (일본, 이탈리아, 멕시코, 벨기에) 뿐입니다.